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01-2014-012381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1외 1필지 강남유담유블레스 제4층 제4-비-424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4년4월29일	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1, 652 강남유담유블레스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0	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0층 업무시설(오피스텔)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633.052㎡ 2층 1864.4216㎡ 3층 1864.4216㎡ 4층 1864.4216㎡ 5층 1864.4216㎡ 6층 1864.4216㎡ 7층 1864.4216㎡ 8층 1864.4216㎡ 9층 1864.4216㎡ 10층 1864.4216㎡ 지하 1층 2856.8200㎡ 지하 2층 2459.4500㎡ 지하 3층 2869.3940㎡ 지하 4층 2502.2180㎡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1	대	1624㎡	2014년7월24일 등기
2	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2	대	1616.1㎡	2014년7월24일 등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51의 1필지 강남유타유블레스 제4층 제4-비-424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4년4월29일	제4층 제4-비-424호	철근콘크리트구조 25.6979㎡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	2 소유권대지권	1616.1분의 5.63	2014년7월24일 대지권 2014년7월24일 등기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4년4월29일 제97828호		소유자 주식회사무궁화신탁 110111-28674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, 19층(대치동, 글라스타워빌딩)
	신탁재산처분에의한 신탁			신탁원부 제2014-3344호
2	소유권이전	2014년5월29일 제120315호	2013년2월20일 매매	소유자 김중호 350325-*****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-9, 502호(수서동, 목화오피스텔)
	1번 신탁등기말소		신탁재산의 처분	
3	소유권이전	2015년6월10일 제161491호	2015년4월22일 매매	소유자 오현희 490925-*****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344번길 69-5 거래가액 금178,000,000원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14년5월29일 제120320호	2014년5월29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00,860,000원 채무자 김충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-9, 502호(수서동,목회오피스텔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-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(회현동1가) (문정동지점)
1-1				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14년7월24일 등기
1-2	1번근저당권담보추 카			공동담보 2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크 대차관
2	근저당권설정	2014년8월5일 제170251호	2014년7월17일 추가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100,860,000원 채무자 김충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-9, 502호(수서동,목회오피스텔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-0023393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(회현동1가) (문정동지점)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
3	1번근저당권설정, 2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	2015년1월21일 제13806호	2015년1월21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